



광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G 보

제34호 2026. 8. 26.(수)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153호

광양시 공고 제2026-1849호

광양시 공고 제2026-1850호

광양시 공고 제2026-1851호

광양시 공고 제2026-186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입법예고 1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9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1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3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
예고 15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6-212호

광양시 고시 제2026-215호

광양시 고시 제2026-216호

광양시 고시 제2026-2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7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18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21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23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6-1835호

공시송달공고 24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713, 행정27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15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자치법규명(1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2. 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시민여론조사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시민여론조사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시민여론조사의 질문지 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시민여론조사의 결과 공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시민여론조사의 위탁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시민소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yparksc@korea.kr
- 일반우편: (우 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시민소통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2-613-6171)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1부. 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여론조사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나. 시민여론조사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다. 시민여론조사의 질문지 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라. 시민여론조사의 결과 공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 시민여론조사의 위탁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해당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여론조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이하 “시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민여론조사)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② 통합특별시장은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1년 내에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 변화에 따라 의견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시책 만족도, 인지도, 시책 및 사업 평가, 현안 인식, 제안 및 개선의견 수집 등 단순한 의견조사(온라인 설문조사 포함)는 본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조사방법)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직접(대인)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면접조사
6.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제6조(질문지의 작성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 등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시책 등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② 통합특별시장은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할 때에는 편향된 응



답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등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기관
2. 조사일시·대상·방법
3. 표본의 크기
4. 피조사자 선정방법
5. 응답률
6.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7. 표본오차
8. 질문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여론조사 의뢰)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여론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시민여론조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사,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3. 작성자: 자치정책관 시민소통과 지방행정6급 박성철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광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취지(제정이유)

- 광양시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진흥 및 지속 가능한 전승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무형유산 전승자 및 전승단체의 안정적인 전승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 시장 및 지원 대상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4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6조)



- 무형유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9조)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8. 24. ~ 9. 14.(22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5. 제정 조례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문화예술과 국가유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직접방문), 팩스, 우편,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우 57785)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행정2길 5, 4층 문화예술과(중동)
- 전 화: 061-797-2732
- 팩 스: 061-797-4184
- 전자우편: neoor07@korea.kr

※ 우편(전자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의견서 제출서식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2. 입법취지(개정이유)

- 우리 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사전심사제도를 거쳐 채용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 필요
- 현행 노동관계법령과 배치되는 규정 내용의 삭제 및 법적 명시 사항 중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실무 적용의 명확성 제고를 목표로 함

3. 주요내용

-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제5조 전면개정)
- 채용절차 합리화(제7조 개정)
- 보수 조항 현실화(제4장 개정)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규정 마련(제21조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제7장 신설: 제26조, 제27조)
- 표창·징계 기준 및 절차 명문화(제8장 신설: 제28조~제30조)
- 별지 제1호(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사전협의 요청서)서식 수정
- 별지 제3호(근로계약서)서식 수정
- 별지 제8호(서약서)서식 수정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8. 24. ~ 9. 13.(21일간)
-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 규정안: [붙임2]

6.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총무과 인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직접방문), 팩스, 우편,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청로 33, 총무과 (우 57785)
- 전 화: 061-797-2724
- 팩 스: 061-797-2579
- 전자우편: khk5169@korea.kr

※ 우편(전자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1부.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

2. 개정취지(개정이유)

- 시민 참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규 마스코트 및 캐릭터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징물 관리·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상징물 사용 승인 절차와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정 홍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신규 캐릭터 반영에 따른 상징물 명칭 정비(안 제3조)
- 상징물 사용료 운영기준 마련(안 제12조)
 - 사용료 납부 의무 및 납부방법 규정
 - 사용료 산정기준을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
- 상징물 사용료 면제 대상 정비(안 제12조)



- 공공목적 사용에 대한 면제 기준 명확화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근거 마련

○ 신규 마스코트 및 캐릭터 반영(별표 3 및 별표 4)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8. 24. ~ 9. 14.(22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5. 제정 조례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기획예산실 기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직접방문), 팩스, 우편,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우 57785)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청로 33, 기획예산실
- 전 화: 061-797-2701
- 팩 스: 061-797-2574
- 전자우편: idealscene@korea.kr

※ 우편(전자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의견서 제출서식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2. 입법취지(개정이유)

○ 서울사무소장 근무지의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소재지 및 근무지) 사무소의 소재지 및 근무지 명확화

* 안 제3조

○ (사무실) 사무소 소재지의 위치를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

* 안 제6조

4. 규정안: 별첨

5. 의견제출

○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후 광양시장(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제출기한: 2026년 9월 16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 제출기관: 광양시 기획예산실
 - 주 소: (57785)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 전 화: 061-797-1941
 - 전자메일: kura007@korea.kr
 - 팩 스: 061-797-2574

붙임 1. 의견서(서식) 1부.

2.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84, 1층
	성명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광양지회(대표 김재오)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881-2 일원
	면적	2,500㎡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한국해양환경보전 캠페인 및 기금마련 바자회
점용기간		2026. 9. 12. (1일간)

-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25.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마동 1527 외 9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8.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 부여 10건					
1	건물번호 부여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양시 황길동 65-11, 65-3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양시 항만6로 77 (황길동)	20260826	20090902	광양항 항만시설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2	건물번호 부여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양시 마동 273-69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양시 가야등1길 17-4 (마동)	20260826	20210303	가야산의 등성이 길에서 작명 및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 부여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 1046-1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양시 진상면 지원길 138	20260826	20081001	법정리명에서 인용
4	건물번호 부여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양시 마동 1413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양시 눈소9길 39 (마동)	20260826	20191113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옛 지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5	건물번호 부여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495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양시 다압면 항동길 98	20260826	20220831	행정리명에서 인용
6	건물번호 부여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460-1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양시 광양읍 해광로 551	20260826	20090710	해룡면과 광양읍을 연결하는 도로로 읍면 행정명칭 조합
7	건물번호 부여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813-7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양시 광양읍 서평3길 12	20260826	20081001	옛 관아 서쪽 들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8	건물번호 부여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양시 황금동 산15-13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양시 황금5로 68 (황금동)	20260826	20211215	사업지구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9	건물번호 부여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405-1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133-1	20260826	20081001	신재 최산두 선생의 호에서 인용
10	건물번호 부여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양시 마동 1527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양시 눈소9길 32-18 (마동)	20260826	20191113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옛 지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광양시 옥곡면 대치로 219-1	2026. 8. 26.	건축물 멸실
2	광양시 용장길 280(성황동)		건축물 멸실
3	광양시 광양읍 칠성1길 17		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25.

광 양 시 장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연 번	업무 구분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말소일 (건축물멸실 확인일)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건물번호 폐지	광양시 옥곡면 대치로 219-1	무허가건축물 (2026. 8. 20.)	2026. 8. 26.	건축물 멸실
2	건물번호 폐지	광양시 용장길 280(성황동)	무허가건축물 (2026. 8. 21.)	2026. 8. 26.	건축물 멸실
3	건물번호 폐지	광양시 광양읍 칠성1길 17	2026. 6. 11. (2026. 8. 24.)	2026. 8. 26.	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축물 멸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광 양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역

승인번호 및 연월일	목 적	장 소	면 적	기 간	피 승인자	
					주 소	성명
2026-5 (2026. 8. 26.)	하동복합 직배관(가스배관) 건설공사 중 지반조사	광양시 태인동 1747 전면 인근 해상	500.0㎡	하기일로부터 30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0	(주)알에스에프 엔지니어링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조치 요청”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광 양 시 장

- 1. 공 고 명 :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조치 요청 공시송달 공고
- 2.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10.(15일간)
- 3. 공고장소 : 광양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4. 공시송달 내용
 - 가. 처분의 제목: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조치 요청
 - 나.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아래 참조
 - 다.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건 축 물 소 재 지	처 분 원 인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처분 당사자	반 송 주 소	반송사유
광양시 마동 1576-1번 지 외 3필지	「건축법」 제19조 위반 가. 지하1층 판매시설(상점)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77.89㎡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조치 요청	박O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1길 60,101동 201호(조례동 남양휴튼)	폐문 부재 등
	「건축법」 제14조 위반 '가' 지하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철파이프조 9.6㎡ '나' 지상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철파이프조 20㎡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조치 요청	정O영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위반 '다' 지하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주요구조부(내력벽)일부철거 4.4㎡				

- 5. 유의사항
 -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061)797-2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